



제 1126 호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령 제2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

공 고

- 공고 제2013- 1245호 제2회 구민창안대회 5
- 공고 제2013- 12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
- 공고 제2013- 1249호 도로의 지정 15
- 공고 제2013- 125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
전통지 공시송달 16
- 남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공고 제2013- 6호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

고 시

- 고시 제2013- 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사업 실시계획 27

회 람								
----------------	--	--	--	--	--	--	--	--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8월 23일

남동구 훈령 제2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농수산 개발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농업1, 행정·시설1, 행정·해양수산1
		7급	7	행정1, 시설2, 농업1, 해양수산1, 농업·수역2
		8급	3	행정·해양수산1, 농업2
재무과	계		2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공업·시설1
		7급	6	행정3, 공업2, 시설1
		8급	6	행정5, 시설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1	
		6급	3	사무1, 기계1, 운전1
		7급	6	사무1, 운전5
		8급	1	운전1
		9급	1	운전1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보 건 행정과	계		29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1
		5급	3	행정·보건·간호1, 의무2(개방형1)
		6급	4	보건1, 보건·의료기술1, 행정·보건·간호1 보건·간호1
		7급	10	보건2, 의료기술4, 간호2, 보건·간호2
		8급	6	행정1, 의료기술3, 간호2
		9급	2	보건2
	기능직	소계	3	
		6급	1	운전1
		8급	1	간호조무1
		9급	1	운전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만수2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6급	1	운전1
		8급	1	사무1
만수6동	계		11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6급	1	운전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수산분야 장기 결원해소 및 전문인력 확보와 운전원 상위직급(6급) 정원을 조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2013. 8. 8.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에 규정된 본청 및 직속기관, 각 동별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을 맞게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일반직 주요 조정 현황(별표 1)

- 농수산개발과 : 행정8급 1명 ⇒ 행정·해양수산8급 1명

- 운전원 주요 조정현황(별표 1, 3, 5)

구분 \ 직급	재무과 (별표1)				보건행정과 (별표3)				만수2동 (별표5)				만수6동 (별표5)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4	3	-	1	-	1	-	1	-	1	-	1	-	-	1	-
개 정	<u>1</u>	<u>5</u>	<u>1</u>	1	<u>1</u>	-	-	1	<u>1</u>	-	-	-	<u>1</u>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1245호

제2회 구민창안대회

우리 구에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구정발전 및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접목하고자, 구민 여러분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구민창안이란?

- ◆ 사회적으로 ‘가치’와 ‘필요’가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 상상력 넘치는 공익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1. 공 모 명 : 창안 한마당! 구민행복을 디자인하자

2. 공모기간 : 2013. 8. 21 ~ 10. 11(52일간)

3. 참가자격

가. 남동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나.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이 있는 사람

4. 공모분야

가. 자유과제(10분야)

- | | | |
|----------------|------------|------------|
| ① 소통과 화합의 참여행정 | ② 생활편의 | ③ 복지·봉사·기부 |
| ④ 생태환경도시 조성 | ⑤ 문화·예술·체육 | ⑥ 지역경제활성화 |
| ⑦ 교통·주차환경 개선 | ⑧ 교육환경 개선 | ⑨ 기타 |

나. 지정과제(5분야)

- ① 남동구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 ② 소래포구 축제의 향토체험 이벤트 방안
- ③ 남동구 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 ④ 골목길 주차난 해결 방안
- 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5. 공모방법 : 서면 및 인터넷 접수

가. [구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참여마당/행복제안) (www.namdong.go.kr/참여마당/행복제안)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 (www.epeople.go.kr/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다. 우편 및 팩스 :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기획예산실 제안담당자/
Fax 032-453-2059 (제출 후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6. 심사기준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평가

7. 포 상 : 총 7명

가. 금 상 : 상금 2,000천원, 1팀(명)

나. 은 상 : 상금 1,000천원, 1팀(명)

다. 동 상 : 상금 500천원, 2팀(명)

라. 장려상 : 상금 300천원, 3팀(명)

8. 이런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현재뿐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남동구에 있음.

나. 신청서류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하되, 적의 조정 가능함.

다. 응모자는 제안서가 기한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라.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함.

마. 공동응모자는 시상금이 주제안자(대표자)에게 지급됨.

바. 제안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의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 환수 조치함.

사.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청 기획예산실(☎032-453-2050)

(앞 쪽)

제 안 서				
수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접수번호 (연필로 기재)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 자유제안 ☐ 지정제안		
제 안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주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팩 스 번 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고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지정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분야)을 기재함
 - 자유제안 10분야, 지정제안 5분야중 1개 분야 선택 및 분야명 기재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 2인 이상 공동제안자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 위촉 시 공개모집 방법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선발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장 공개모집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통장 직무수행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통장 공개모집 방법 및 시기 사항 신설 (안 제3조)
 - 나. 현대사회 흐름에 맞춘 반상회 토의사항 반영 (안 제5조제3항)
 -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 토의 추가
 - 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발굴 및 추천 반영
 - 방법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반영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0,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 시행규칙(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 이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8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 안 이 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 위촉 시 공개모집 방법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선발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장 공개모집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통장 직무수행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통장 공개모집 방법 및 시기 사항 신설 (안 제3조)
- 현대사회 흐름에 맞춘 반상회 토의사항 반영 (안 제5조제3항)
 -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 토의 추가
 - 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발굴 및 추천 반영
 - 방법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구청장은”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제6조에서” 를 “제7조에서” 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 한다.

② 공개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제1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4. 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발굴 및 추천
5. 방법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생략) ② <u>구청장은</u>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위촉 후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현행과 같음) ② <u>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조의3(통장증의 사용) ① (생략)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u>제6조에서</u> 정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3(통장증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제7조에서</u> ----- -----.
<신 설>	제3조(공개모집 등) ① <u>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 한다.</u> ② <u>공개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③ <u>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u> ④ <u>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3조(반원명부 비치 등) (생략)	제4조(반원명부 비치 등) (현행과 같음)
제4조(반사회) ① ~ ② (생략) ③ 반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u>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u> 2. ~ 3. (생략) 4. <u>수혜대상자 선정</u> 5. <u>방법 신고망 운영</u> 6. ~ 7. (생략)	제5조(반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u> 2. ~ 3. (현행과 같음) 4. <u>생활 곤란자 등 수혜대상자 발굴 및 추천</u> 5. <u>방법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u> 6. ~ 7. (현행과 같음)
제5조(반운영위원회) (생략)	제6조(반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6조(편의제공) (생략)	제7조(편의제공) (현행과 같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49호

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8. 21 ~ 9. 4 (15일간)

2. 도로 현황

- 가. 위 치 : 도림동 574-2
- 나. 도로길이 : 16.0m
- 다. 도로너비 : 0.4m
- 라. 도로면적 : 5.0㎡
- 마. 토지소유자 : 윤 덕 철
-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허가(신축)

3. 건축허가 현황

- 가. 위 치 : 도림동 574-2
- 나. 건 축 주 : 윤 덕 철
- 다. 용 도 : 농산물보관 창고
- 라. 규 모 : 건축연면적 132.0㎡, 지상1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5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업자(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폐문 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당 사 자	성 명 (상호)	박 * 영 (A간석 게임랜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1****-1
	사업장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9, 2층 (간석동 122-12번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13.3.21일경 ~ 2013.3.31. 16:00경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하였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등급받은 내용과 다른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1차, 환전 1차)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6.청 문 실 시	기관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장아영
	주 소	인천 남동구 소래로688(만수동1008번지)			전 화	453-2143
					팩 스	453-2139
	일 시	2013. 09. 24. (화) 10:00 ~ 11:00 (1시간)				
	장 소	남동구청 6층 문화체육과				
	주재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변 완 수				

2.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도착 반드시 확인바람)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m²)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공고 제201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정장소 : 바다, 바닷가, 해수면, 내수면(공공용, 사유) 등
 - 통제구역의 명칭, 위치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 또는 상실 된 경우
 - 낚시통제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
- 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회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012, 5030, FAX 453-50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 8. 22.

발 의 자 : 이 오 상 의원 (1명)

찬 성 자 : 5명

□ 제 안 이 유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정장소 : 바다, 바닷가, 해수면, 내수면(공공용, 사유) 등
 - 통제구역의 명칭, 위치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 또는 상실 된 경우
 - 낚시통제구역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 고 자 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 제55조
-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조례 입법예고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명칭, 위치, 면적 및 기간 등을 구보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 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표 2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낙시통제구역에서 낙시를 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부록 2]

과 태 료 수 납 부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이오상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7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사업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로3-3호선 외 1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년 8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4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소1-28호선)
 - 나. 명 칭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소로3-3호선 B=6.0m, L=190.0m
 - 나. 소로1-28호선 B=10~17.0m, L=6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동구청장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1	609	도	1,147	50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2	643-18	과	4	4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3	643-19	과	4	4	박**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772				
4	643-20	과	664	664	황**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475번길 18, 16동 205호				
5	644-8	목	92	9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6	644-7	도	149	149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7	636-2	전	134	134	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34 이삭아파트 101동 501호				
8	644-6	대	6	6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9	643-17	전	15	15	문**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7동 711호				
10	638-5	과	256	256	고**	637				
11	638-8	목	12	12	고**	637				
12	638-10	창	105	105	고**	637				
13	638-7	목	34	34	고**	637				
14	1068-27	도	210	210	국	재무부				
15	635-19	전	90	90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16	635-20	전	59	59	고**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17	635-21	전	106	106	대**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18	1068-6	도	534	48	국	인천시 남동구				
계				2,038						

☐ 지장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구월동	643-20	수 목	소나무	주	10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475번길 18	황**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475번길 18	황**
2	구월동	644-8	담 장	디자인웍스	m	17.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3	구월동	644-7	정화조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수 목	감나무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담 장	EGI웍스	m	40.0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4	구월동	644-1	담 장	블록	m	8.5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담 장	메쉬웍스	m	22.5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 외 2인
5	구월동	636-2	수 목	유실수	주	1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 101동501호	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 101동501호	이**
			수 목	배나무	주	5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 101동501호	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 101동501호	이**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6	구월동	638-5	수 목	배나무	주	3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7	구월동	638-10	건 물	블럭슬라브	m2	104.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대 문	가선판넬	개	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8	구월동	635-19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담 장	철제메쉬	m	50.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옹 벽	석 축	m	7.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9	구월동	635-20	수 목	참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건 물	콘크리트	m2	3.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수 목	조경수	개	14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수 목	채소	개	3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수 목	소나무	개	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외 1인
10	구월동	655-1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배나무	주	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11	구월동	655-2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단풍나무	개	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사철나무	개	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12	구월동	635-21	옹 벽	보강토	m	29.0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13	구월동	655-4	건 물	콘크리트	m2	47.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9	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9	고**
14	구월동	655-7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